

## 제 6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제 6.1 조 목적

이 장의 목적은

- 가. TBT 협정의 이행 개선을 통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증대하고 촉진하며,
- 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 다. 양 당사국 간 공동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 제 6.2 조 일반 규정

양 당사국은 TBT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TBT 협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 제 6.3 조 적용범위

-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 당사국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또는 제14장(정부조달)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규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 6.4 조 국제 표준

- 1. 각 당사국은 TBT 협정 제2.4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한도에서, 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서 관련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를 사용한다.
- 2. TBT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의 의미 내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이하 "TBT 위원회"라 한다)가 1995년 1월 1일 이래 채택한 「협정 제2조, 제

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sup>1</sup>을 적용한다.

## 제 6.5 조 기술규정의 동등성

1.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 규정이 자국의 규정의 목적을 적절히 충족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2.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 제 6.6 조 적합성 평가절차

1.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따라서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가.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의 수용

나. 특정 기술 규정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의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

다.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 기관은 자신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 기관과 자발적 인정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 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의 채택

양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사용되는 메커니즘의 범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2. 양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을 만족스럽게 보증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한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

<sup>1</sup> G/TBT/1/Rev.9, 8 September 2008 Annex B to part I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 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3. 제2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 이전에, 그리고 개별 적합성 평가결과에 영구적인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관련된 적합성 평가기관의 기술능력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이 자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결정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4. 한쪽 당사국은 각국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상호 인정을 위한 협정 교섭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한쪽 당사국이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상호인정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 제 6.7 조 투명성

1. 한쪽 당사국은 TBT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중앙통보등록처에 통보문을 제출함과 동시에, 부속서 6-가에 언급된 다른 쪽 당사국의 조정자에게 동일한 통보를 전자적으로 한다.

2. 가능한 경우, 각 당사국은 다음의 문서와 함께 부속서 6-가에 언급된 다른 쪽 당사국의 조정자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가. 관련 국제표준에 기초한 새로운 기술규정 및 기존의 기술규정의 개정본

나. 관련 국제표준에 기초한 새로운 적합성 평가절차 및 기존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정본

다.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새로운 기술규정안 및 기존의 기술규정의 개정안, 그리고

라.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새로운 적합성 평가절차안 및 기존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정안

3.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통보는 통보된 문서 전체에 대한 온라인 링크나 사본을 포함한다. 가능한 경우, 양 당사국은 통보된 문서의 전체 또는 요약본에 대한 온라인 링크나 사본을 영어로 제공한다.

4.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상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서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술규정안 및 적합성 평가절차안의 통보일 후 최소 60일을 부여한다. 한쪽 당사국

은 의견제시 기간의 연장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합리적인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5.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에 대한 답변 또는 그 요약이 자국이 최종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공표하는 날보다 늦지 않은 때에, 인쇄하여 또는 전자적으로,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한다.

6.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7. 한쪽 당사국은 기술규정의 채택과 그 발효 간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비효과적일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규정안 통보 후 의견제시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접수된, 다른 쪽 당사국의 합리적인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8.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양 당사국은 수출당사국의 생산자가 수입당사국의 요구 사항에 맞게 생산품 또는 생산방식을 조정할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기술규정 공표와 그 발효 간 합리적인 시간 간격<sup>2</sup>을 허용한다.

9. 양 당사국은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유롭게 접근가능하고 공개된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 제 6.8 조 공동협력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각 당사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양 당사국은 특정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무역촉진 이니셔티브를 확인, 개발 및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투명성, 우수 규제 관행의 증진, 국제표준과의 조화, 그리고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의 사용과 같은 규제 문제에 관한 협력

나. 이 장 및 TBT 협정에서 발생하는 도량형 요구의 효과적이고 충분한 준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 지원

---

<sup>2</sup> 합리적인 시간 간격이란 2001년 11월 14일 결정(WT/MIN(01)/17)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 및 우려 제5항에 따라,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비효과적일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다. 투명성, 동등성의 활용, 그리고 규제 영향 평가와 같은 우수 규제 관행에 대한 공통의 관점을 개발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사용

3. 이 조에 기술된 협력은 1) 자동차 부품, 2) 섬유, 의류 및 디자인, 3) 화장품 및 위생품, 그리고 4) 의약품 및 의료기와 같은 분야에 특히 중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협력 확대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제안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 제 6.9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이 장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

나. 이 장의 이행, 집행 및 운영의 점검

다.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채택·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의 신속한 처리

라. 제6.8조에 규정된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 공동협력의 제고

마. 상호인정협정의 교섭을 위한 절차의 촉진

바.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당사자 사안에 대한 양 당사국 각각의 견해를 포함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의 교환

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 지역 및 다자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대한 정보의 교환

아.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

자. TBT 위원회상의 모든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의 개발

차.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사안 또는 특정 분야를 위한 임시작업반의 설치

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장의 이행에 대하여 공동 위원회에 보고, 그리고

타. 이 장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판단하는 그 밖의 조치의 이행

3. 위원회는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한다. 회의는 직접 대면, 또는 원격회의, 화상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제2항아호에 따른 협의를 이용한 경우, 그러한 협의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제20.4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구성한다.

5. 부속서 6-가의 제1항에 규정된 당국은 각국의 영역에 있는 관련 기관 및 인과의 조율과 그러한 기관 및 인이 관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연락채널을 통하여 작업을 수행하며, 이 연락채널은 전자우편, 원격회의, 화상회의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 제 6.10 조 정보교환

1.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일반 우편, 또는 전자메일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수용한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서면으로 전달된다. 당사국은 그러한 각 요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응답하도록 노력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 6.1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TBT 협정 부속서 1의 용어 및 정의가 적용된다.

#### 제 6.12 조 국경 통제 및 시장 감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 가. 문서가 기밀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의 국경 통제 및 시장 감시 활동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교환한다. 그리고
- 나. 국경 통제 및 시장 감시가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행해지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당국이 인정·지정 또는 위임된 기관과 통제 또는 감시의 대상인 경제 주체간의 이해 충돌을 피하면서, 이들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도록 보장한다.

부속서 6-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및 조정자

1. 제6.9조의 목적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는 다음이 주관한다.

가. 한국의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콜롬비아의 경우, 통상산업관광부 또는 그 승계기관

사안에 따라, 책임 부처 또는 규제기관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2. 제6.7조의 목적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콜롬비아의 경우, TBT 협정에 따른 중앙통보등록처의 문의처